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7 레즈비언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

3회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판타스틱 레즈비언 생활백서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CONTENTS

## CONTENTS

- 03>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소개
- 04> 일정 및 프로그램
- 05> 프로그램 전체 기획 의도
- 06> 강좌 별 세부 기획 의도
  
- 09> 1강 [레즈비언이 만난 세상] / 레즈비언 인권활동가
- 13> 2강 [레즈비언이 만난 세상] / 레즈비언 커뮤니티
- 18> 3강 [레즈비언의 건강과 성] / 레즈비언과 우울증
- 26> 4강 [레즈비언의 건강과 성] / 여성질환과 성
- 30> 5강 [벽장 밖에서 만난 사람들] / 레즈비언과 법
- 56> 6강 [벽장 밖에서 만난 사람들] /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가족구성권에 관한 토론)
- 68> 7강 [교제와 독립에 관하여] / 레즈비언의 독립
- 69> 8강 [교제와 독립에 관하여] / 레즈비언 교제하기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소개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를 전신으로 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한국 사회 레즈비언의 독자적인 권리 운동을 추구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 억압의 토대인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에 반대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업, 레즈비언 대상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사건 지원, 자긍심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한 교육, 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레즈비언 권리 운동, 레즈비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운동,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실천적 인권운동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1994년 11월 <끼리끼리>의 발족을 시작으로 하여 레즈비언 인권운동은 10여 년간 진행되어 왔고, 최근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형성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레즈비언의 존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레즈비언을 향한 폭력은 더욱 거세지고,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차별도 심각합니다. 여전히 이 사회에는 레즈비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무시나 편견, 왜곡이 팽배한 것입니다.

레즈비언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동성애자로 이중의 억압에 처해 있습니다. 정체성 혼란, 커밍아웃과 아우팅의 문제, 독립의 문제, 교제의 문제,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레즈비언이 직면하고 있는 괴로움은 너무나 많고 심각합니다. 많은 레즈비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개인의 레즈비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줄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레즈비언의 고민을 모아 레즈비언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공간 역시 꼭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한국 최초의 독자적인 레즈비언 상담소로서,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을 억압해온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 및 이에 근간한 제도에 대항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간사가 상근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게시판상담, 이메일상담, 면접상담, 내방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개개인 레즈비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레즈비언을 향한 모든 차별과 억압의 종식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대표전화 02) 703-3542

상담전화 02) 718-3542

팩스번호 02) 703-3543

대표메일 lsangdam@sangdam.org

상담메일 lsangdam@hanmail.net

홈페이지 www.lsangdam.org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일정 및 프로그램

## 1주 9월 29일 (토)

### [레즈비언이 만난 세상]

2:00-4:00 레즈비언 인권활동가

김윤서이 (케이)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4:00-6:00 레즈비언 커뮤니티

김자윤·크리스

| 30대 이상 여성이반 모임 <그루터기>

## 2주 10월 6일 (토)

### [레즈비언의 건강과 성]

2:00-4:00 레즈비언과 우울증

루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4:00-6:00 여성질환과 성

현이유빈(쏘머즈)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3주 10월 13일 (토)

### [벽장 밖에서 만난 사람들]

2:00-4:00 레즈비언과 법

서현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4:00-6:00

-사회자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김김찬영 (나루)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가족구성권에 관한 토론)

-토론포널

천재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박은우 (데조로)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박김수진 (박통)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지나 | 30대 이상 여성이반 모임 <그루터기>

## 4주 10월 20일 (토)

### [교제와 독립에 관하여]

2:00-4:00 레즈비언의 독립

저녁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4:00-6:00 레즈비언 교제하기

장민아

\* 모든 프로그램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신세계관 212호에서 진행됩니다.

\* 각 강좌의 내용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07 레즈비언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  
제 3회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판타스틱 레즈비언 생활백서”

## 프로그램 전체 기획 의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는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차단하고 그릇된 정보를 유포하여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동성애자에 대한 몰이해적인 입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대외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2003년 제 1회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를 기점으로 연계 사업을 추진, 2005년 제 2회 ‘레즈비언 - 행복한 관계 맺기’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가을, 한국레즈비언 상담소는 많은 분들이 보여주셨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기억하며 제 3회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레즈비언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은 '판타스틱 레즈비언 생활백서'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그 안에서 레즈비언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담아 보았습니다. 레즈비언이라는 성 정체성은 단지 '性'이라는 삶의 일부분 안에서만 얘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충분히 녹여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즈비언들이 자신과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커뮤니티를 만나 서로 소통하고 지지해주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일상적인 사회의 호모포비아로부터 시달리는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아울러 동성애자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레즈비언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인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의 취지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몰이해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올바른 정보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레즈비언의 삶을 위한 노력을 통해 레즈비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3회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 "레즈비언과 생활">을 통해 서로의 애환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행복한 레즈비언의 삶을 위해 같이 고민해 보고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07 레즈비언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  
제 3회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판타스틱 레즈비언 생활백서”

## 강좌 별 세부 기획 의도

### 1주 [레즈비언이 만난 세상] 9월 29일 (토)

#### 1강. 레즈비언 인권활동가 | 2강. 레즈비언 커뮤니티

어쩌면 나는 레즈비언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들도 지나 왔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커밍아웃할 수 있기까지, 많은 레즈비언들이 각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은? 우리는 레즈비언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당신은 레즈비언이라는 길 위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레즈비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담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1강에서는 한국 레즈비언상담소에서 잔뼈 굵은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김윤서이(케이) 님이 <현실에 뿌리 내리는 방법, 레즈비언 활동가로 살기>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레즈비언 인권의 불모지에서 활약하는 케이 님의 모습 궁금하지 않나요?

2강에서는 30대 이상 여성이반 모임 <그루터기>의 김자윤, 크리스 님이 나오셔서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20대 중심의 커뮤니티 문화 속에서, 30대 이후 다른 레즈비언들과 함께 하는 일은 더 특별한 의미일 텐데요. 본 강의에서 김자윤, 크리스 님은 1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모임 <그루터기>에서의 우여곡절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여서 같이 들어요.

### 2주 [레즈비언의 건강과 성] 10월 6일 (토)

#### 3강. 레즈비언과 우울증 | 4강. 여성질환과 성

우리 사회에서 이제 우울증은 더 이상 낮은 단어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심각해 보이지 않기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우울한 날은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울한 기분 때문에 더 이상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면, ‘그저 기분 탓’이라고 회피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가끔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우울한 감정들을 더욱 부추깁니다. 아니,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레즈비언들이 우울하지 않기로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회적 편견에 따른 아우팅 문제나 커밍아웃하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 느끼는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을 혼자 극복하기란 녹록치 않기 때문이에요.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마음의 건강, 이제 함께 챙겨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 2007 레즈비언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 <제 3회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판타스틱 레즈비언 생활백서”>에서는 <레즈비언의 우울증> 에 관련한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강의에서는 우울증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레즈비언과 우울증의 관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나의 우울증을 다루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요.

“섹스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삽입 얘기, 너무 남성 중심적이에요!”

“임신 기간을 피하는 법은 이렇고 저렇고.., 저는 레즈비언인데요?”

이성 간의 섹스, 피임법만을 이야기하는 성문화 속에서 우리는 곤혹스럽습니다. 레즈비언의 성 이야기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나요? 내 몸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말할 수 있나요?

레즈비언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 ! 궁금하지만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던 내 몸의 이야기, <레즈비언의 건강과 성> 시간에 마음껏 풀어 놓으세요.

### 3주 [벽장 밖에서 만난 사람들] 10월 13일 (토)

#### 5강. 레즈비언과 법 | 6강.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가족구성권에 관한 토론)

“동성간 성폭력도 성폭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이우팅 위협도 협박인데, 어떤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문제들이 궁금하고 절실합니다. 우리 사회의 법은 이성애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말, 두 번 말하면 입 아픈 소리이기 때문이죠 ^^ 레즈비언들의 법률적인 문제는 그래서 더 막막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법! <레즈비언들이 알면 유용한 법률 상식>, 지금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어떤 형태의 가족을 꾸리고 살고 싶은가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나요?”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쉽이 합법화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야 할까요?”

레즈비언에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람마다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레즈비언 정체성으로 이성애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를 살아 가면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할 수도, 쉽게 접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레즈비언으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시간을 통하여 세대별 이야기도 들어보고 나의 이야기도 해 보아요.

## 4주 [교제와 독립에 관하여] 10월 20일 (토)

### 7강. 레즈비언의 독립 | 8강. 레즈비언 교제하기

누구나 그렇듯 레즈비언에게도 독립의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인 독립 뿐 아니라 정서적인, 정신적인 독립까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레즈비언은 노후생활을 걱정하기 마련인데, 이는 지금의 정상가족형태가 아닌 홀로 또는 파트너와 함께 살아가는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혐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독립하여 살아갈 때에,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레즈비언으로서 경제적, 물리적인 독립에서 나아가 정서적, 정신적인 독립에 대하여 <레즈비언의 독립>시간에 서로의 고민을 나누어 봅시다.

많은 레즈비언들이 자신의 애인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생활의 동반자로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데이트를 하는 것과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이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맞춰가야 할 것들이 무척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부지런히 대화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연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가사노동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경제적인 부분은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책임져 나갈 것인가, 두 사람이 사는 집에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들이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두 사람이 의논해서 조정해 나가야 할 문제는 수도 없이 많으니깐요. 마지막 강의! 8강 <레즈비언 교제하기>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눠 보는 자리입니다.

# 현실에 뿌리내리는 방법, 레즈비언 활동가로 살기

김윤서이 (케이)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1. 활동 = 뿌리 뺏기

사실 제가 레즈비언 권리 운동이라는 활동을 결의하고 수년 간 해 온 바탕에는 커다란 사명감이거나 불굴의 의지보다도, 아주 소박한 바람 한 가지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딴 생각과 공상만으로도 하루를 너끈히 보내곤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제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그냥 제 앞가림이나 간신히 하면서 붕 뜬 정신 상태로 헤매기 쉽겠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게 된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대체 어떤 곳인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상시 예리하게 다루며 살고 싶었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꿈꾸고, 상상하며 살아봤자 제가 꿈에 그리고 맘에 그리는 이상적인 그림들이 현실에 나타나주지 않는다는 걸 어렵פות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활동은 땅에서 어느 샌가 피어나 곳곳이 바람에 몸을 맡기는 들꽃의 뿌리나 마찬가지로요. 하루하루의 활동은 조그맣게 천천히 돌아나는 잔뿌리 같아서 흙을 쥐는 힘을 더 세게 만들어줍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면서, 저는 제가 대면한 현실에 뿌리 하나를 더 뺏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편견 속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로 힘든 현실의 문제점을 하나 더 발견하고 지적할 수 있게 될 때마다 잎 하나를 더 틈웁니다. 활동은 저로 하여금 이 세상 속의 제 위치를 가늠하도록 해 주는 지도와 나침반 같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만의 GPS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활동을 통해 저는 저 자신을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른 레즈비언들을 포함한 타인들과의 관계, 이 사회와의 관계 등등 말이에요. 난 어디에 있지? 난 누구일까? 난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나?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결국 관계를 둘러싼 것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십대 후반의 젊은 비혼 여성이며, 여성과만 관계를 맺고 싶은 레즈비언입니다. 그렇기에 살아가기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녹록치 않음과 매일매일 부딪칩니다. 아니, 단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보다, 단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에 더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다른 이들이 겪는 어려움들까지 늘 머리 속에 마음속에 담게 되고, 그래서 왠지 더 무거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거움이 바로 저를 지탱해줍니다. 이 무게감으로 인해 저는 제가 처한 현실, 비슷한 짐을 진 타인들이 직면한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 현실을 구체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게 되니

까요. 홀로 뚝 떨어져 고립된 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말이지요.

## 2. 중요한 건 하루, 또 하루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손에 꼽을 만 한 건 없습니다. 도대체가 평온할 성 싶으면 사건 터지고, 좀 일이 덜하다 싶으면 갑자기 상담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는 게 일이니 말이지요. 몇 년을 상담소에 있어도, 항상 새로운 일들이 터집니다. 평소에 미처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상담소로 접수되고 그러지요. 솔직히 매일이 특별합니다.

그러나 가만 돌이켜 보니 분명 맘 한 편에 또렷이 남은 장면들은 있네요. 처음으로 상담 전화를 받은 날이라든지. 수차례에 걸친 면접 상담과 전화 상담 끝에 용감하게 작별 인사를 해 오는 내담자와의 전화를 마치고 조금 울었던 순간이라든지. 또, 이사를 하던 날들이라든지. 아, 그렇지, 반지하 사무실이던 시절 두 번이나 수해 복구하던 일도 있군요. 그 해에 기승을 부린 파리떼는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외부 단체와의 회의에 나가 긴장했던 날들도, 일년 치 상담 카드를 정리하기 위해 상담팀 활동가들이 모두 한꺼번에 피씨방 한 구석을 다 차지하고 앉아 끙끙거렸던 일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컸던 일들 중심으로 인상적인 장면이 재생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이어지는 느낌 그 자체가 가장 강렬하지 않나 싶어요. 매주 정해진 시각에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할 일들을 논의하고, 담당 요일에 올라온 상담글에다 24시간 안에 답변을 달아 주고, 신입 회원과 기존 회원이 차츰 친해져 가고 하는 일상적인 과정들, 이게 바로 단체의 골격이면서 활동의 에센스이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십삼 년여의 세월을 버텨 온 힘 역시 이렇듯 짜임새 있게 다져진 상시 업무들을 그 토대로 하겠고요.

## 3. 힘 날 때, 힘들 때

상담소가 있어 좋다, 든든하다, 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 말로 표현 다 못할 정도로 기뻐요. 레즈비언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탐색 중인 여성들에게, 이러한 이들의 지인들에게 위안과 의지가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상담소의 목표이니까요. 제일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는 저의 내담자가 활동을 하겠노라 상담소로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상담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이야기를 나눈 이와 동지가 되는 경험이란 진실로 맘이 짠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본인은 레즈비언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담소에 아는 사람이 있는 이도 아닌데 단지 상담소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상담소를 후원해 줄 때, 그럴 때도 우리 활동에 대한 믿음이 물씬 생기면서 뿌듯하고요.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레즈비언 관련 활동이 생겨나고 있지만 각 영역이 여전히 척박하여 활동하는 모두가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런 뿌듯함이 활동가들에게 북돋아 주는 용기는 굉장합니다.

그러나 항상 허덕이며 일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담소만해도, 두 명의 상근 활동가에게 조차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월급을 겨우 지급하면서 나머지 인력은 전부

자원활동가로 총당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체 운영에 따르는 불안정성과 동시에 활동가에게 부과되는 생활의 이중, 삼중고를 나타내는 사실입니다. 전업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께 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와 학업과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가 불안정하여 인력이 확보되기 어렵고, 단체에 안정적으로 머물 인력이 부족해 단체의 불안정성이 유지되는 악순환이 바로 고질적인 문제랄까요. 최소한 이 정도 일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소수의 사람이 과중한 업무를 떠맡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지쳐서 쉬거나 그만 두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일들인데, 그게 어지간해서는 철저한 무보수라는 점, 이 건 말로 써놓고 보았을 때는 그런가, 싶을 수 있는 일일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 활동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는 알지만, 나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활동가가 무보수란 사실은 기타 단체 운영 경비도 결코 넉넉지 못하다는 걸 뜻하지요. 기획하고 싶은 활동이 있어도 늘 돈 걱정부터 해야 한답니다. 물론 돈이 충분해도, 최대한 알뜰히 재정을 관리해야 하겠으나, 돈이 없으면 애초에 아예 뭘 시도하기가 난망하여 더 문제인 겁니다.

힘 날 때의 이야기는 앞에서 짧게 끝내버렸으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그렇지만 갑갑함은 또 있습니다. 레즈비언 활동가로서 다른 활동가를 상대하고, 회원을 상대하고, 타 단체 활동가와 만나고, 언론을 대하고, 하는 업무들을 일상적으로 하다보면 철저한 고독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활동이 몸에 익을수록 고립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말하는 고독감이란, 레즈비언들과는 같이 있지만 사회로부터는 동떨어져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으로부터 비롯되는 감정이랍니다. 나는 그저 레즈비언이지만 한 것 같은 느낌. 나는 그저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라는 말로 밖에 설명될 수 없는 존재인건가, 하는 안타까움. 내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인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라는 측면을 존중받기 위해 하는 활동인데, 이 활동에 치이면서 나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욕구만 자꾸 커질 때, 맘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되도록 제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되, 사람들과 섞여 살고 싶으니까요.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죠…?

#### 4. 꿈

활동 차원에서. 재정 안정, 레즈비언 전용 쉼터 만들기,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는 사무실 마련하기, 지역 레즈비언 운동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 아시아 지역 레즈비언들과 더 활발히 연대하기, 한국 사회에 레즈비언 운동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다 널리 알려나가기 등등.

개인 차원에서(결국 활동과 연결돼 있긴 하지만). 레즈비언 활동가라는 것에 자신감 갖기, 언제나 레즈비언 관련 소식에 귀를 세우면서도 자기 페이스를 지키며 곳곳이 살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 만나는 이들에게 가능하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커밍아웃을 하고 지내

기(아 정말 말도 안 되는 건가) 등등.

이러니저러니 해도, 저는 그저 이 활동이 제 무덤이려니, 하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로 이 활동을 줄이거나 쉬게 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예 발을 뺀 채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앞서도 말했듯 활동이 제 뿌리가 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 뽑혀 방황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을 한없이 너그럽게 보며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매섭게 보면서 아주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화해 나가는 것을 느끼고 싶어요. 온화하고 따스한 맘이 되, 시의적절하게 신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스스로에게요.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해 주는 힘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활동일겁니다.

같이 하실 분은 언제나 환영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렇게 홍보 인사를 하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 레즈비언 커뮤니티 -30대 이상 여성이반 모임 <그루터기>

김자윤 (그루터기 회장) | 그루터기

### ■ 카페이름 : 그루터기

힘겨운 삶을 살아 온 모든 이반들의 쉼터이고 싶은 뜻으로 초대 회원이신 최미숙님이 명명하여 10년 동안 많은 이반의 쉼터가 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회원 확보의 어려움과 회원들의 탈퇴로 위기 상황이라면 위기상황에서 원로(?)들이 답답한 마음에 혹시 “그루터기” 이름 때문이 아닐까라는 염려에 개명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하기도 했지만 10년 동안 그루터기를 거쳐 간 많은 회원들의 정신적인 쉼터로서의 역할과 우리모임은 양적 팽창이 목적이 아닌 커뮤니티 안에서의 “우리” “가족”이라는 모토아래 10년을 같이해온 회원들이 있음에 “그루터기”의 역할은 충분하단 결론으로 개명은 안하기로 했다.

### ■ 특징 및 성격

- 한국 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임원과 회원이었던 분들이 30~40대 모임의 필요성에 의해 1997년도에 결성하여 1998년 초대회장을 시작으로 현재 2007년 10대회장까지 이어 오고 있고, 초기에는 회원 수가 40명이 넘을 만큼 활성화 되어 많은 이반들의(30~40대) 갈증을 풀어주는 최초의 장이기도 하였다.

당시 평균연령은 30대 중반으로 젊은 모임이었으나 그루터기가 10살이 된 현재는 평균연령 40대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회원 대부분이 커플로 안정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의 모임이다.

그루터기는 오프라인 위주의 모임이라 회원가입의 절차가 조금은 까다롭다 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회원이 되고 싶어 오는 이들에게 무조건 개방하였지만 어느 정도의 고정회원이 생기고 가족적인 친밀감으로 회원 간의 사생활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신입에 대한 선별이나 조건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입회원에 대한 회장과 총무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회칙을 만들게 되었고 가입해서도 정회원 자격을 득하기까지의 과정 등..다른 모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존 회원들의 보호차원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신입의 유입경로가 한정되어 “끼리끼

리”나 업소를 통해 확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수의 회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

### ■ 이상의 활동이 레즈비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되고 활력이 되는지?

그루터기와 10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40대 중반을 넘기는 나이가 되었다. 이 반 커뮤니티에 가입했을 때만 해도 30년을 넘게 살아온 세상과는 이별을 고해야 하는 것 같은,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듯한 두려움에 무척이나 망설였었다. 그러다 용기 내어 찾아가던 곳이 마포에 있던 “레스보스”였었고 그곳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이들이 많음에 놀랐고, 잘못된 정보(드라마, 잡지 등)에 의해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체성의 자유스러움을 느껴가던 차에 그루터기를 접하게 되었다. 이후 그루터기에 들어와 10년을 하루같이 설레임으로 모임을 기다리고 모임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맘껏 발산할 수 있었다. 모임은 또 하나의 세상(내가 태어난 대로 살 수 있고, 나의 이야기를 많은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이었고 인생 최대의 선물이자 개인적으로 값진 역사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 ■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에피소드

1. 한 회원의 모친 부고 소식에 편도 4시간 거리인 지방까지 회원들과 문상을 다녀온 일.
2. 일 년에 1회(가을, 봄) 산행을 정기적으로 했었을 때의 일로 일행 중 한 회원을 잃어버린 일. (홀로된 회원은 북한산에서 우이동으로 넘어가버렸음)
3. 짝궁이 없다는 이유로(?) 매년 생일 때면 회원들의 집에서 차려준 생일상 받았던 일.
4. 회원 간의 갈등으로 2달 동안 회원들의 집을 오가며 선배, 후배 모두 발 벗고 나서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동분서주 했던 일.
5. 남자보다 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내손을 꼭 잡으며 “난 선배가 좋더라”하던 회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
6. 솔로들이 좀 있었을 때 레스보스에서 일요 병개를 해서 춘천으로 놀러갔던 일.

### ■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노하우는?

운영에 있어 특별한 노하우는 없었던 것 같다.

회장과 총무의 임기가 1년으로 비교적 짧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임원으로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해마다 회장과 총무의 특색에 맞게 운영되어 졌고, 그래서 회원 모두가 임원의 역할을 해 봄으로써 모임 운영의 어려움을 서로 공감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특별한 노하우 없이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는 모임 전, 모임 후, 경·조사 등 회원 챙기기와 사생활의 공유, 약간의 의무성을 띤 교류노력과 중립적이고 개관적인 판단과 결과 유도, 회원간의 프라이버시 보호, 적절한 중재역할, 신속한 정보공유로 모임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소속감)을 증대시키는 것 등이 모임운영의 노하우는 아니었나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회원들간에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모임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 ■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힘들었던 점 혹은 사건사고

운영하며 힘들었던 것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장소 섭외와 회원 확보에 대한 부담감 등인데, 정모 장소의 섭외는 회원들이 언행에 자유롭고 편안한 곳을 원하고 경비는 한정된 상황에서 물색해야 했기 때문이고,

회장으로써 중립적인 위치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접할 때 개인의 의견이나 판단보다는 회원 중심의 혹은 당사자들의 상황이 제일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많은 고통이 따랐던 것 같다.

회장 직책으로써의 책임감과 결정권이 모임 구성원간의 또는 모임의 존속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모임의 회장으로서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아닐까 생각한다.

## 레즈비언 커뮤니티 -30대 이상 여성이반모임 <그루터기>

크리스 (그루터기 회원) | 그루터기

### ■ 커뮤니티를 가입하게 된 계기

전 2006년 12월에 레즈비언 상담소의 회원으로 가입했고, 레즈비언 상담소 활동가들의 즉흥적인 주선으로 말미암아 2007년 1월에 30 - 40대의 모임인 그루터기 회원으로도 가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1991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1992년경 미국에서 대학 다니는 동안 'gay dance party' 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 한국인들에 의한 아웃팅(그때는 그 용어조차도 몰랐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조심스레 그들의 모임을 관망했습니다.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긴 가죽 부츠를 신은 두 여자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 늘씬한 두 남자의 뒤엉킨 모습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떤 (예쁘다고 해야 할지, 잘생겼다고 해야 할지 모름) 여장 남장 한 남자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립스틱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가지고 있다고 하기에 원하면 저희집에 가서 맘에 드는 립스틱을 고르라고 하고는 제 차를 타고 집에 같이 갔습니다. 그 남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상당시간을 있다가 나왔는데, 수염도 깨끗이 깎고, 다리털도 밀고, 그리고 빨간 색깔의 립스틱을 바르고는 제게 고맙다고 말하고 하루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외모가 정말 '여자같다' 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후 저는 gay 클럽의 임원들을 집에 불러 저의 커밍아웃을 의논하고 고려했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서질 않았고,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종교가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둘 중 어느 것도 극복할 자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티에서 만났던 친구들 특히, 저희학과 gay 친구들이 제게 인사라도 할라치면 전 못 본 척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4년도에서야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했는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의 용기를 칭찬해주며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과 파트너도 찾기를 바란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저를 이해해 줄만한 친구들, 그중 교회에서 알고 지낸 지인들께도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응은 거의 '놀람(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었습니다. 그 후 2006년도에 한국에 돌아왔고, 커밍아웃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레즈비언 상담소와 그루터기의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중. 고등학교 동창들, 친언니, 직장동료들에게 너무 신중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가볍고 자연스럽게 제가 레즈비언인 것을 이야기 하고 있

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반들에게 말 할 때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검열 작업을 하고, 또 자기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꾸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인 자신을 바라 볼 때마다 아직도 레즈비언의 삶을 제자신이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루터기 모임에 처음 나가던 날부터 몇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점점 회원들과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 짐에 기쁩니다. 10년이란 세월을 꾸준히 이끌고 있는 회원들에게 찬사를 보내고픈 마음입니다. 어떤 회원이 제 생일날 보내주었던 “환갑이 될 때까지도 좋은 회원으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는 제 마음에 늘 도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고 싶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 ■ 커뮤니티에 대한 희망사항

미국에서 활동하는 Santa fe Rape Crisis Center (<http://www.sfrcc.org>)에서는 동성애 혐오증 역시 성폭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의 혐오증을 직접적인 폭력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기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커뮤니티도 이런 일에 같이 연대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성애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위에서 ‘축하’한다고 하지만, 동성애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온갖 ‘이상한 추측’(변태적 성행위자, 성적 취향이 독특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등) 들을 하며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을 향하여 변태라고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듯이 이성애자들 또한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변태 혹은 비난하지 않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자임을 인정하지만, 소수자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권리를 빼앗겨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주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희망이라면 나의 가족들과 커뮤니티 가족들과 함께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정기적으로 만나서 친목도 다지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싱글인 경우가 많기에 명절에 가족들과 모이는 것은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레즈비언의 마음 챙기기

루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1. 레즈비언의 마음 챙기기

- 불확실성은 누구에게나 불안을 유발
- 정체성이 확실해도 도움을 받기 어려워하거나 도움을 받을 방법을 모르는 경우
- 정체성에 대한 불안, 수치스러움, 죄책감을 다룰 수 있어야
- 한 명의 개인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 여기까지만 내 탓, 나의 패턴과 한계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변화를 모색
- 다른 이들과 연결

## 2. 위험요인

- 사회적 스트레스, 낙인
- 정체성에 대해 적대적인 가족, 친구, 주변환경
- 가족, 친구의 거부, 상실
- 사회적 공격과 폭력
- 사회적 지지의 부재
- 이후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
-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중압
- 수용 받지 못하는 나

## 3. 심리적 어려움

- 자기-부정
- 내면화된 혐오
- 자존감, 자기 개념, 자기 가치, 태도와 신념, 자아상
- 우울, 불안, 분노
- 죄책감: 나의 잘못, 처벌과 억압을 정당화
- 고립감, 소외감, 대인관계 회피
- 자기파괴적 행동
- 극단적인 정서적 기복

- '정직함'과 '거짓됨'

#### 4. 우울삽화

- 1) 하루의 대부분,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 보고나 객관적 관찰에서 드러난다
- 2)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을 경우
- 3) 현저한 체중감소나 체중증가 혹은 현저한 식욕감소나 증가
- 4) 불면 혹은 과다 수면
- 5)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 6) 피로 혹은 활력상실
- 7) 무가치감 혹은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 8)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우유부단함
- 9)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생각,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특정 계획

#### 5. 경계선 성격장애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동에서의 불안정성, 심한 충동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징적 양상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난다. 다음 중 5가지 이상 항목을 충족시킨다.

- A.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유기를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 B. 극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반복되는,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관계 양식
- C. 정체감 혼란: 심각하고 지속적인, 불안정한 자아상 또는 자아 지각
- D. 자신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동성이 적어도 2가지 영역에서 나타남
- E. 반복적인 자살 행동, 자살 시능, 자살 위협, 자해 행위
- F. 현저한 기분의 변화에 따른 정동의 불안정성
- G. 만성적인 공허감
- H.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 또는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움
- I. 일과성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망상적 사고 또는 심한 해리 증상

#### 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A.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이 동반된 경우

- B. (1) 반복적이고 침투적인 회상
  - (2) 고통스러운 꿈의 반복
  - (3) 사건이 재발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느낌
  - (4) 사건과 유사하거나 사건을 상징하는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심각한 심리적 고통 혹은 생리적 재반응
- C. (1) 외상과 관련된 생각, 느낌, 대화, 행동, 장소, 사람을 피한다
  - (2) 외상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할 수 없다
  - (3) 중요한 활동에 흥미나 참여가 저조
  - (4) 타인으로부터 소원해지거나 분리되는 느낌
  - (5) 감정을 느낄 수 없음
  - (6) 미래에 대한 기대의 상실
- D. (1) 수면 장애
  - (2) 분노폭발
  - (3) 지나친 경계
  - (4) 과도한 놀람반응

## 7. 관련연구

- 전반적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인(Augeli, 2003)
  - 정체성에 대한 여성 양육자의 반응
  - 언어적인 피해
  - 신체적인 피해
  - 피해에 대한 두려움(자살 위험)
- 파트너의 존재, 사회적 지지는 레즈비언 여성의 우울을 감소 (Ayala & Coleman, 2000)
- 대안적인 가족 (Cooperman et al., 2003)
- 가족이나 동료보다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획득(Bradford et al., 1997)

## 8. 지원체계의 선택

- 치료자의 선택
  - 치료의 주체는 나
  - 비밀보장과 신뢰
- 심리학자
- 정신과의사

- 전문 활동 기관의 활용, 신뢰할 수 있는 집단에 참여

## 9.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수용하기

Accepting Ourselves & Others (Kominars & Kominars, 1996)

- 내면의 뿌리깊은 편견과 전형을 제거
- 다른 사람과 진실된 상호작용
- 다른 누군가를 혐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숨지 않기
  
- 자기 수용의 과정을 촉진
  
- '정직함'과 '자기보호': 한계를 정하기, 도움을 청하기
- 자기 자신에게 '정직함'
- 긍정적인 자아상을 키우고 자기 혐오를 감소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된 신념과 오해를 수정
- '레즈비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을 갖기
- 외부의 혐오에 거리를 두어 가는 과정
- 부정을 우리의 자기개념이나 자아상에 적용시키지 않고 버텨내기

## BECK 우울척도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은 모두 네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개의 문장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중 요즈음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여 그 번호를 ( )안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빠지 말고 반드시 한 문장만을 선택하시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1. 0) 나는 슬프지 않다.  
1) 나는 슬프다.  
2)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 ( ) 2. 0)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 ( ) 3.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  
3) 나는 인간으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 ( ) 4. 0) 나는 전과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1)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2)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 ( ) 5.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2)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3)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 ( ) 6. 0) 나는 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어쩌면 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2) 나는 별을 받을 것 같다.  
 3) 나는 지금 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 ( ) 7. 0)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3)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 ( ) 8. 0)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2)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3)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탓이다.
- ( ) 9. 0)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1)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2)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 ( ) 10. 0)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2)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3)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기  
 력조차 없다.
- ( ) 11. 0)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2)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3)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즘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 ( ) 12. 0)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1)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 ( ) 13. 0)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1)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2) 나는 전에 비해 결정 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3)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 ( ) 14.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나이들어 보이거나 매력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2) 나는 내 모습이 매력없게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3)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 ( ) 15. 0) 나는 것처럼 일을 할 수 있다.  
 1)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에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2)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3)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 ( ) 16. 0)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가 없다.  
 1) 나는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2) 나는 전보다 한두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3) 나는 평소보다 몇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 ( ) 17. 0)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2)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3)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 ( ) 18. 0)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1)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2)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3)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 ( ) 19. 0)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1) 전보다 몸무게가 2Kg 가량 줄었다.  
 2) 전보다 몸무게가 5Kg 가량 줄었다.  
 3) 전보다 몸무게가 7Kg 가량 줄었다.

▲ 나는 현재 음식 조절로 체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예, 아니요)

( ) 20. 0)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 1)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 2) 나는 건강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 3)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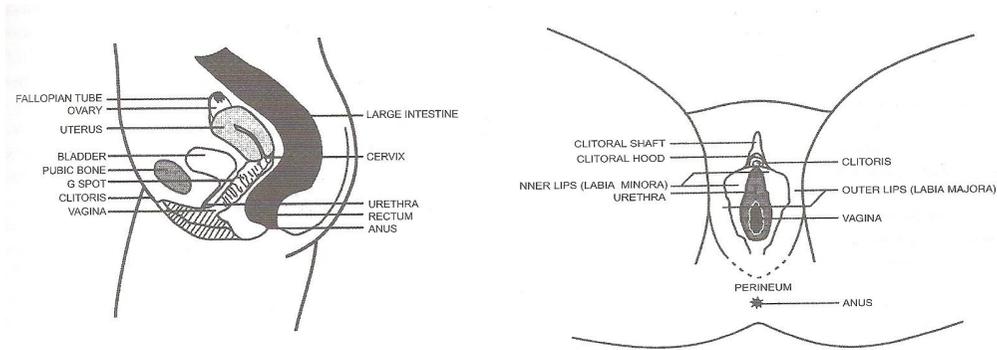
( ) 21. 0) 나는 요즈음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1)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2)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 3)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 여성질환과 성

현이유빈(쏘머즈)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I. 당신은 당신의 몸과 친한가요?



## II. 당신의 몸을 보호해 주세요!

### II-1. 대표적인 여성 질환 몇 가지

#### 1. 질염

##### 1) 질염이란?

질염은 냉, 대하증을 동반하는 산부인과 질환 중 가장 흔한 질병에 속합니다. 여성들은 일생동안 몇 번씩 냉, 대하증을 겪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맞은 치료를 요합니다. 질염의 증상은 냉, 대하 외에 가려움증, 성관계시 통증, 소변시 쓰라림과 화끈거림 또는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냉은 황색의 악취가 나는 병으로 대하가 많아지고 몹시 가려우면 임질이나 트리코모나스 등의 성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질과 외음부에 심한 가려움을 동반하며 순두부 찌꺼기 같은 냉, 대하가 나올 때는 칸디다 질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2) 질염의 종류와 증상

-세균성 질염 : 주요 증상으로는 냉, 대하증과 함께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악취는 성관계후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악취는 "아민"이라는 물질 때문이며 세균성 질염이 있는 경우에는 골반염을 앓을 확률이 높습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 : 기생충의 일종으로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성병으로 전파력이 강력합니다. 감염된 파트너와 한번만 관계를 해도 70% 이상이 감염됩니다. 물처럼 흐르는 다량의 냉으로 팬티가 젖거나 악취가 나며, 질 입구가 따끔거리거나 가려울 시에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칸디다성 질염 : 가장 흔한 형태의 질염으로, 증상은 흰색의 걸쭉한 냉과 심한 가려움증을 들 수 있으며, 냉의 형태가 비지 또는 두부를 으갠 것, 혹은 치즈같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가려움으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경우도 많으며 곰팡이의 일종으로서 장기간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임신부나 당뇨병 환자에게 잘 생기는 병입니다.

-염증성 질염 : 염증성의 상피세포가 심하게 떨어져 나오면서 고름같은 냉이 많이 생기며, 질과 외음부의 화끈거림, 관계시 느끼는 통증, 냉의 양이 많아지는데, 염증성 질환의 원인은 분명치 않습니다.

-위축성 질염 : 환경 이후의 여성에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결핍으로 인하여 질벽이 얇아지면서 다량의 냉과 성교통을 유발하며 질상피 세포의 위축으로 인해 건조감이 생기고 성관계 후에는 소량의 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 2. 자궁경부암

### 1) 자궁경부암이란?

말그대로 자궁 경부에 생기는 암으로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과 함께 5대 자궁질환으로 꼽히는 자궁경부암은 성행위를 통해 전염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주원인입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으므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 2) 자궁경부암의 증상

①이상 분비물 : 처음에는 물 같거나 약간 피가 섞인 정도입니다. 다른 염증성 질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서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데 암이 진행되면, 분비물이 더욱 많아지면서 색깔도 짙어지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

②비정상적 출혈 : 월경이 있는 나이라면, 보통은 월경과 월경 사이에 출혈이 나타납니다. 또 대변을 보기 위해 힘을 주거나, 성 접촉 후에 출혈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③하복부 등의 통증 : 암이 진행되면 주위 조직과 기관 및 신경을 압박하여, 하복부, 허리, 골반 등 여기저기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지속적인 요통과 골반통은 자궁경부암의 말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 II-2. 성병

성병은 성관계로 전파되는 감염을 말합니다. 성기의 접촉, 입.항문 등을 통해 전염이 되나 사면발이 같은 성병은 속옷, 카페트, 수건 등을 통해서도 전염이 됩니다. 흔한 성병으로 임질, 헤르페스, 클라미디아 등이 있으며 곤지름, 각종 질염, 사면발이 등도 있습니다. 성병은 자연치유되는 경우가 없고 전염성이 강하므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배우자가 감염된 때도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100% 완치 될 때까지 성적인 접촉을 피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1) 성병의 증상 : 성병에 걸리면 전신 및 피부.구강.질.회음부 등에 특징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 ①물집과 사마귀가 항문까지 번짐
- ②입속의 하얀 껍질, 궤양이 생김
- ③피부발진, 탈모
- ④미열, 몸살기운

2) 성병의 종류

- ① 매독
- ② 임질
- ③ 헤르페스
- ④ 곤지름
- ⑤사면발이

## III. 당신의 몸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III-1. 섹스란 과연 뭘까요?

### III-2. 몸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1. 나의 성감대, 그녀의 성감대
2. 질과 클리토리스
3. '오 선생님'이 궁금해요~!!
4. 위생상의 문제 : 성병, 신체부위의 위생, 도구들의 청결 유지, 콘돐의 사용

### III-3. 몸이 원하는 다양한 방법들

1. 손가락과 입의 사용
2. 여러 가지 체위



### 3. 다양한 도구들과 소품들

### III-4. 그 외에 이야기해 볼 것들

EX) 섹스를 위해 역할 구분은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팸 역할/ 부치 역할???

## 레즈비언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상식

서현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I.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당하였다면

#### 1. 아웃팅, 아웃팅 매개 범죄, 혐오범죄

##### 1) 아웃팅과 범죄 사례

부산지방경찰청은 28일 동거녀가 동성애를 이유로 변심하자 직장 등에 대자보를 붙여 동성애 사실을 폭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포(45.부산 해운대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 동거해오던 이모(29.여.회사원)씨가 직장 여성 동료와의 동성애를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씨의 직장 정문 등에 '이씨는 같은 여자 끼리 연애를 하는 사람이다'는 등의 대자보를 붙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이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돌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상습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2004년 4월 28일, '동성애 이유 변심 동거녀 상습 협박'

당신이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당신의 전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반임을 알려줬다(아웃팅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현행법상 협박죄(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실제로 당신의 직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반임을 아웃팅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sup>1)</sup>

또한 누군가가 당신이 이반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당신의 핸드폰으로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

1)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합의서(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제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서 작성시 신중해야 한다.

## 2) 아웃팅을 수단으로 한 범죄는 협박, 강요,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웃팅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공갈죄로 처벌되며, 아웃팅을 수단으로 각서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강요죄가 될 수 있고, 당신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등을 가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로 가중처벌 된다.

(구체적인 처벌이 벌금이나 구속이냐는 개별적인 상황,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름.)

## 3) 혐오범죄

### 사례1. 이유 없는 폭행과 협박<sup>2)</sup>

남산 인근에서 32세의 남성 C씨가 정체 모를 사람 2명에 의해 각목으로 구타당한 사건임.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노숙자로 밝히고 "우리들이 호모들을 잡아서 경찰에게 많이 넘겼다. 집이 어디냐, 나이가 몇이냐,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 동성연애 계속 할거냐 라는 폭언으로 내담자를 협박했음.

- 『2004 첫 번째 상담사례 연구분석 '열린 성소수자 상담, 어떻게 시작할까?』. 동성애자인권연대, 2004.

### 사례2. 종교를 빌미로 한 호모포비아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이하 <변날>)>는 국내 대학의 성적소수자 모임 중 유일한 레즈비언 독자 운동모임이다. 미션 스쿨인 이화여대에서 어렵게 자치 단위로써의 위상을 획득한 뒤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학내의 보수 기독교 동아리로 추측되는 세력이 <변날>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방해하고 <변날>이 배포하는 자료집을 몽땅 가져다가 폐기처분하며 <변날>이 걸어둔 플래카드를 가위질해 놓고 <변날> 방에 성유(聖油)를 뿌려놓고 달아난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변날>이 개최하는 학내 레즈비언 문화제에 대해 '레즈비언 문화제를 반대하는 학내 모임을 결성해 호모포비아적인 활동을 펼친다.

- <변날> 활동가들의 경험담

혐오범죄도 현행법상의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

---

2) 이하 모든 사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국가인권위원회)” 참조

나 혐오범죄에 대한 불법성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sup>3)</sup>

## 2. 동성간 성폭력의 문제

### 1) 사례

#### ① 이는 사람에게 의한, 이성애자 여성-이성애자 여성 간 성폭력

B씨는 우연히 한 방에 엄마 친구분과 단 둘이 있게 되었다. 함께 TV를 보고 있던 중, B씨는 그 아주머니로부터 생리는 하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계속 성적인 질문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그냥 엄마 친구로서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불쾌하게 느껴지는 질문들이었다. 그 아주머니는 브래지어를 하냐고 물어보면서 B씨의 가슴을 만졌다. 싫은 내색을 했음에도 계속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가슴까지 만지자 결국 B씨가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정말 불쾌했고, 앞으로도 그 아주머니를 만날 일이 또 있을 텐데 다시는 그 아주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

- 반성폭력네트워크, 「성폭력 이제 그만 2」 사례

#### ② 친목모임에서의 레즈비언-레즈비언 간 성폭력

가입한 친목모임에서 연 정기모임에 참석한 피해자는 만취한 한 여성으로부터 심한 스킨십을 당했다. 처음에는 다리를 손으로 감싸는 게 싫더니 나중에는 다리 사이에까지 손을 집어 넣고는 무력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수차례 “불쾌하니 멈추라”고 경고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까지 말했으나 만취한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다. 주변인들 중에는 이를 보고도 말리는 사람 하나 없었다.

- 반성폭력네트워크(kirikiri.org/network) 공개상담게시판 사례

#### ③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레즈비언-레즈비언 간 성폭력

서울지검 형사5부 황인규 검사는 13일 동성연애 관계를 청산하려는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해온 박현순씨(39·여·서울 관악구 신림동)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89년 9월 여성전용 헬스클럽에서 만나 동성연애를 해온 공모씨(32)가 지난해

---

3) 미국은 3개 주만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을 두고 있다.

부터 관계를 끊으려하자 같은해 6월 공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과도로 위협하고 『남편에게 동성연애 사실을 알려겠다』고 협박,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황검사는 『죄질은 강간 또는 특수강간에 가까우나 동성연애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1991년 09월 14일 (사회) 가십 22면 판 292자

## 2) 동성간 성폭력은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현행법<sup>4)</sup> 해석상 강간의 개념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강간의 개념이 생식기관 중심적으로, 이성에 중심적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간 성폭력은 그 범죄의 악랄함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결코 '강간죄'의 죄목이 될 수 없고, '강제추행죄'<sup>5)</sup>로만 처벌이 가능하다.<sup>6)</sup>

## 3. 형사사법제도를 통한 피해자 구제 절차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소(고발) - 경찰 수사 - 검찰 수사 - 기소 - 법원 - 판결”이라는 전형적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사 담당자들의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으로 관계자에 대한 모욕, 편견에 기초한 수사, 아웃팅 등 인권 침해가 절차 내에서 반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성소수자들이 공적인 문제 해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

4)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

5)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 된 날, 범행 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해야한다.

6) 스웨덴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여 동성간의 성교뿐 아니라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도 강간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또한 남성도 여성 가해자에 의한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성폭력 대상을 확장시켰다.

호주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진행된 각 사법관할지역의 형법개정 경향을 볼 때, ①강간(rape)이라는 용어를 몇몇 지역에서 성폭행(sexual assault)로 대체하고 ②보다 광범위한 행위를 성폭행에 포함시키으로써 다른 물건이나 음경 외에 다른 신체부위에 의한 질, 항문, 입의 관통이 강간이나 성폭행으로 정의되었다.

## 1) 고소(고발)장 작성 및 수사시 상담활동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소, 고발 과정부터 상담활동가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인권 침해적 수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 엄격한 처벌 기타 수사 진행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고소(고발)장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과정에서 관련자의 성적체성이 외부에 밝혀지지 않도록 소환방법, 조사 방법 등에서 유의할 것, 범죄구성요건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성적체성에 대한 질문을 금지할 것, 동성간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의 경우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피해자 보호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의2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 횡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의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경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수사관의 수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문제제기할 수도 있다. 청문감사실은 일종의 경찰 내부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므로 민원인들의 진정을 접수하여 내부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일정한 내부 징계 조치나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7)

### 3) 형사배상신청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 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 4. 가정폭력의 문제

- 혈연관계에서의 가정폭력, 파트너관계에서의 가정폭력문제

### 1) 사례

#### ① 딸의 애인 살해

김모씨 부부는 최근 "우리 딸이 동성애자라며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최모씨(60·여)를 상대로 1억1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김씨 부부의 딸(당시 48세)이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집에 찾아와 자신의 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함께 살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딸에게서 떨어져라"며 효자손 등으로 1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 동아일보, 2002년 03월 11일 (사회) 가십 31면 05판 275자

---

7) 만약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비밀보장을 위반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수사 경찰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해 2차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 -서울신문, 2007.8.18.

## ②혈연가족에 의한 정신과 치료 강요

피해자는 레즈비언임을 혈연 가족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대학교 남자 동기에 의해 그 사실은 혈연 가족에게 알려 짐.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를 종합병원 신경정신과에 강제 입원을 시키고 “이성애자로 만들기” 위한 “치료”에 돌입.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정서적 고통을 당함.

- 성적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사례수집 (내부자료)

## ③레즈비언 파트너 간 폭력

서울 동부경찰서는 14일 자신과 사귀던 동성 애인이 변심한 데 격분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박아무개(23·여·전북 전주)씨와 이에 맞서 싸운 최아무개(3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3일 아침 6시30분께 최씨 집에 찾아간 박씨는 최씨가 다른 여자와 알몸으로 누워 있는 것에 흥분해 화분을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최씨에게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 한겨레, 1996년 08월 15일 ‘레즈비언들의 사랑 싸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은 ‘가정구성원’간의 폭력을 규율하고 있는데, 위 특례법은 ‘가족구성권’의 범위를 배우자와 부모자녀관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 2호).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이와 같은 규정은 가정의 범위를 이성 배우자와 부모자녀 관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 규정에 따르면 친형제자매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그에 의한 폭력은 법에 의한 가정폭력이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의해, 성적소수자 파트너의 경우 사실혼조차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의미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법상으로도 당신이 이반이라는 이유로 부모나 동거하는 형제자매부터 당하는 가정

폭력을 당하였다면, 응급할 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검사는 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7.8.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7.8.3>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2.21, 2007.8.3>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II. 레즈비언으로서 차별 받았다면,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 1. 사례

사례1. 연세대 퀴어영화제 장소대여 거부/ 사례2.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프로그램 강의실 사용 거부

사례3. 국회, 홍석천씨 국정감사장 입장 거부/ 사례4. 여성성적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의 강좌신청 거부(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아래참조.)/ 사례5. 성적소수자 관련 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차단/ 사례6. 포털 사이트, 동성에 관련 용어 '금칙어'로 선정/ 사례7. 정보통신회사, 동성애자 채팅서비스 개설요청 거절

##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1)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해 상담신청 및 진정을 접수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읍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 (2) 인권상담/진정접수

인권상담은 인권 피해자들이 상담원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가능하다. 진정접수는 전화,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 상담원과 대면하며 상담 및 진정을 할 수 있다. 인권침해, 차별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사건은 원칙적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 접수를 해야 한다.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진정/민원접수)

### <인권위결정례>

#### 1. 2005.02.21.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이용차별

[1] 진정인이 속한 ○○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센터는 여성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추구하고, 여성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설립목적으로 하므로, 설립목적 및 업무내용상 여성발전기본법이 정한 여성단체에 해당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동아리 등록대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이 진정인의 교육수강을 거부한 행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교육시설이용에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 여성센터의 장에게 향후 교육수강에 있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 2. 2003.03.31. 성적지향에 의한 행복추구권등 침해

##### 【결정요지】

[1] 동성애는 정신의학상 정신질환이 아니고, 정신적 장애와 아무 관계도 없으며,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발행의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도 동성애가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이고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 피학성음란증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라고 할 수는 없

다.

[2]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기운명결정권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적행동의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바, 이와 같은 성적행동에는 동성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동성을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제7조 관련)은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 곧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를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심의기준(제7조 관련)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3. 2004.08.03. 【헌혈문진시 성적지향에 의한 평등권침해】

[1] 헌혈기록카드 문진사항 중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는 문항은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하여 HIV 감염확률이 없는 동성애자도 헌혈에서 배제하고,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간주되어 온 잘못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 III. 파트너 관계에서

### 1. 동성간 파트너관계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받는 차별 사례

#### 사례 1. 부부관계를 인정받지 못해서 받는 경제적 차별

우리는 남성 동성애자 커플로 2000년 6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까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결혼 직후 2000년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어 A씨가 직장에서 불입하는 국민연금의 상속이 파트너에게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공단 측은 법적으로는 A씨가 솔로이므로 사망 후 연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였다. 또한, 직장에선 매달 3만원씩 배우자수당이 다른 이성애자 부부들은 수당을 받아 가는데 비해 우리는 받지 못하는 것 역시 사회적 차별이다.

- 여기동, '동성애자 커플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4 토론회 발표집, 2004

### 사례 2. 혼인신고 불가의 법적 차별

저희는 지난 3월 7일 동성애자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 카페에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남자끼리 공개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선 OO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남자끼리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해놓은 규정이 없다”며 찢찢매더군요. 동사무소는 여섯 시간이나 검토한 끝에 “선량한 미풍양속에 어긋나므로 접수 불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국어사전에 나온 뜻 그대로 ‘국민이 의무적으로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보고하는 일이지 허가가 아니므로, 저희는 나라에 ‘결혼했음’을 알린 ‘정식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권단체, 동성애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 동성혼인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 세계일보, 2004년5월20일, [마이내리티 리포트] "사랑도 결혼도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어요"

### 사례 3. 사실혼 관계 인정을 못 받는 차별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42세의 레즈비언으로, 상대 여성과 20여 년간 여느 이성애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함께 생활해 왔고 재산을 함께 모으고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가 휘두르는 폭력으로 인해 관계 해소를 원했으며, 이에 따라 파트너 여성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이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인의 상황과 구체적인 요구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며, 동성간의 동거관계는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그들의 이성에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마저 낳은 것이다.

- 일다, 2004년8월2일자, '법원이 동성애자 차별과 폭력 조장하나'

### 사례 4. 위급시 의료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차별

20대 중반의 레즈비언 커플인 A씨는 늦은 밤에 파트너 B씨가 갑작스런 출혈을 일으켜 급히 응급실로 갔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이 보호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해 가족들은 모두

지방에 살아 지금 올 수 없다고 하자, 병원에서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보호자가 되려면 100만원의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가난한 살림이었던 탓에 밤중에 100만원을 구할 수 없었던 A 씨는 하는 수없이 멀리 사는 B씨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상담 자료 중, 2003년 12월

#### 사례 5. 비자 발급 및 해외 거주자로서의 차별

5년째 동성 연인과 함께 동거중인 레즈비언 P씨(30대 초반)는 2003년에 미국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파트너 M씨는 떨어져 지내지 않기 위해 한국에서의 직장까지 정리하고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이성애자 부부와는 달리 법적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취업은 불법이라 할 수 없었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상담 자료 중 2005년 2월

#### 사례 6. 경조사 휴가신청을 할 수 없는 차별

나는 레즈비언이다. 그녀와 동거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었다. 그런데 어제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함께 내려가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장지까지 따라 가고 싶지만 회사에 경조사 특별휴가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이성애자라면 사실혼 관계에도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녀를 친구라고밖에 소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전국인권활동가대회 <반차별 포럼-노동과 차별> 자료집, 2004년 8월

## 2. 재산문제에 대하여

### (1) 상속과 유증

#### 1) 상속의 문제

동성 파트너는 현행 민법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너 사망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sup>8)</sup>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의 상속분여를 청

8)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트너와 동거하고 있던 경우, 또는 파트너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경우에는 파트너에게 지정상속의 의사표시를 유언으로 해두거나, 사망하기 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

### 2) 유언 및 유증의 방법

유언은 법률에 정해진 방식(민법 제1060조)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사망 전까진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만드는 방법(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다.9)

### (2) 동성간 파트너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아직 국내법원에서 동성간의 '사실혼'을 인정한 예는 없다(위 차별사례3. 참조).

'사실혼'은 법률상 용어<sup>10)</sup>로서, 남녀 간의 사실혼관계에서도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

#### 9) 자필증서에 의한 방법(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로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작성한 연도와 날짜,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을 하면 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타인에게 대필을 시키거나, 타자기로 쓴 것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이름은 반드시 자필로 써야 되고, 날인은 인장이나 지장을 찍으면 된다.

10)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2000도4942)

방은 상속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의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선원법, 국가유공자등에우뒵지원에관한법률<sup>11)</sup> 등에서 배우자로 인정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2000도494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 (3) 동성간 파트너관계를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아직 국내에서 동성간 파트너관계를 '혼인신고'할 수 있다는 법적규정은 없고 동사무소에서 게이 커플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거부하였던 사례가 있었다(위 차별사례3. 참조). 하지만 동성간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동성간 혼인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명백하지 않다. 다만, 민법에서 혼인의 효력부분에서 '夫婦'라는 용어사용, 헌법상 '양성의 평등' 규정이 혼인은 남녀 이성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별첨자료.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참조).

## 3. 자녀 입양문제

(1) 민법상의 일반적인 입양요건에 의하면 **성년자(양친자가 될 사람)는 누구나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

11) **국가유공자등에우뒵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27, 94.12.31., 2000.12.30.]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 1) 민법상의 일반적인 입양요건과 입양절차

우선, 입양당사자 사이에 입양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양친이 될 사람은 성년이어야 하고, 양자의 나이 자체는 제한이 없으나 양친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 동갑이거나 손 아래 항렬이어야 하며 양자는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여서는 안 된다.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입양의 승낙을 하게 된다. 성년자라 하더라도 양자가 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일 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법정혈족관계 발생

입양을 하게 되면 양자는 민법 제772조에 의해 양부모의 혼인중의 출생자라는 신분을 취득하게 되어 양자와 양친 및 그 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 상속관계가 생긴다.

양친자 관계는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법률상 혈족관계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친자간은 물론이고, 양친의 직계혈족, 양친의 형제자매, 손자녀 등과도 혼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파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혼인이 금지된다.

### 3) 양친자관계의 해소 - 파양

입양을 파기 하는 것을 파양이라 하는데 입양 당사자가 합의 하에 파양하는 경우와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파양하는 경우가 있다.

## 2)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요건과 입양절차

이 법은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을 촉진 시키고자 만들어졌다.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제4조에 의하면 부모의 사망이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없거나 가출을 하여 보호자의 보호로부터 떠나 있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의 자녀로서 보호시설 등에 보호가 의뢰된 아동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되려면 제5조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자를 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 ①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④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

이 법에 따른 입양 시 입양이동의 자격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제6조에 의해 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있어야 하며 아동이 15세 이상이면 본인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입양신고는 별첨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참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양친자의 자격 중 혼인중일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서 형식상으로 독신자에 의한 입양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동성부부의 입양이 가능할지는 명백하지 않다. 최근 성전환자 하리수씨의 입양문제가 이슈가 된 것처럼 법적으로 입양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성전환자의 입양은 전례가 없다는 점, 입양되는 아이의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야한다는 점 때문에 입양전문기관은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3)</sup>

12)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가정조사기관"이라 한다)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6.12.11]

<개정전> 제2조 (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가정조사기관"이라 한다)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이어야 한다.
2.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
3. 혼인중일 것

13) 동성커플간의 입양권을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 룩셈부르크, 안도라, 벨기에,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 법적으로 인정된다.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지역, 덴

#### 4. 전 세계 동성 결혼 및 파트너십 현황<sup>14)</sup>

지역범위	시민결합 <sup>15)</sup>	동성결혼 이전 시민결합인정	동성결혼
전국	덴마크(1989) 노르웨이(1993) 스웨덴(1995) 그린란드(1996) 아이슬란드(1996) 프랑스(1999) 독일(2001) 포르투갈(2001) 핀란드(2002) 룩셈부르크(2004) 뉴질랜드(2005) 영국(2005) 안도라(2005) 체코공화국(2006) 슬로베니아(2006) 스위스(2007) 콜롬비아(2007)  비등록 동거 이스라엘(1994) 헝가리(1996) 크로아티아(2003) 오스트리아(2003)	네덜란드(1998)  남아프리카공화국(1999) 벨기에 (2000)	네덜란드 (2001) 벨기에 (2003) 스페인 (2005) 캐나다 (2005) 남아프리카공화국 (2006)  타국 동성 결혼 인정국 이스라엘 (2006) 아루바 (2007) 네덜란드령 앤티리스 제도 (2007)
일부	미국(1997) 아르헨티나(2003) 호주(2004) 브라질(2004) 이탈리아(2004) 멕시코(2006)	스페인(17개 지역 중 12 지역) (1998) 캐나다 (QC, NS and MB) (2001)	매사추세츠주 (2004)
논쟁 중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코스타 리카, 그리스, 아일랜드, 이 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폴란드, 푸에르토 리코, 미국, 우루과이 (무순)		

<표 1> 동성 결혼 및 파트너십 지역적 현황 ( 'same sax marriage',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en.wikipedia.org/wiki/Same-sex\\_marriage](http://en.wikipedia.org/wiki/Same-sex_marriage))

#### 5. 기타 문제되는 것들

**(1)인공수정:** 최근 허수경씨의 인공수정이 이슈화되었다. 국내에는 아직 인공수정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의학계에서 윤리지침으로 법률상 혼인부부(불임부부)

마크, 독일,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시민결합 속 파트너의 아이 또는 입양아를 입양할 수 있는 "stepchild-adoption"을 인정하고 있다.

14)가족구성권연구모임 “파트너십 관련 해외 법률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친구사이 대표 이종헌)

15)가정적 동반자 관계, 동반자 등록법, 시민 결합, 민간 결합 계약 관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인공수정을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관련기사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인공수정가족법 제정토론회'가 개최돼 주목을 끌었다. 현재까지는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와 관련한 법률이 전무한 상태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친자입적 논란과 다툼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해석을 할 수 없으며 이들의 인권문제에도 소홀했었다.

이은정 경북대 법대 교수는 "인공수정과 관련한 확실한 법은 없지만 민법을 통해 친생자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어 2000년 전에는 남편의 동의에 의한 인공수정일 경우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법적지위가 같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명시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정반대의 판결이 나와 제3자에게 정자를 제공받을 경우 다툼 및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법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법제정시 불임부부에 한정하는 법을 만들고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은 금지만 해석될 것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사례를 발표한 엄동섭 서강대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다양한 입법 사례와 달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에 의해 대리모의 일부유형만 금지될 뿐 아무런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응기 함춘 산부인과 원장은 "흔히 말하는 인공수정은 정자를 자궁에 밀어 넣는 것이며 체외수정은 시험관아이를 뜻하지만 정부에서 이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분리해 통합적으로 '인공수태'란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원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 및 의사윤리지침' 등을 제정해 공포했고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도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등으로 의사들의 기본적인 윤리를 강조해 왔다"며 정부차원에서 보강된 새로운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 [쿠키뉴스 2006-03-15]

## (2) 동성혼이 인정되는 국가에서 동성혼을 하고 국내에 입국한 경우

외국에서 인정된 동성혼의 국내에서의 효력은 국제사법상의 문제에 속한다. 국제사법상 혼인의 효력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따라서, 외국국적을 가진 자의 동성혼인 경우 국내에서도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국제사법상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국내에서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제사법),'고 하는 '공서양속규정'에 의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sup>16)</sup>

### (3) 기타 법률상식

#### 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으나, 해고무효 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은 없다. (해고무효확인소송 시 임금지급가처분 신청)

#### 2) 체불임금 해결방법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요청하여 발급받아 소송자료에 활용하여야 한다.

#### 3) 주택임대차보호법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이를 대항요건이라 함) 그 다음날로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 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이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 함)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 되는 경우에 임차주택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

16) 최근 귀화한 파키스탄이 사촌과 결혼했다. 그가 나고 자란 파키스탄에서 사촌과 결혼하는 건 '평범한 일'이다. 그러나 그는 한국인이다. 그러나 그 혼인은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금지하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무효가 되고, 부부는 생이별(배우자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07-07-30 한겨레 참조.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지 역	서 울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 제외)	기타 지역
금 액	2억 4천만원 이하	1억 9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이하	1억 4천만원 이하

[환산보증금액과 계산사례]

- 환산보증금: 연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월세에 100을 곱하여 계산함
- 계산 사례: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20만원의 월세라면 전세환산금액은 1억5천만원[3천 + (120만×100)]이다. 서울이라면 보호대상이지만 지방은 보호를 넘어서는 금액이 된다. 이 때 보증금 3천만원을 보장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를 요령껏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방법이란 계약서상에 보증금 + 월세 + 관리비 식으로 표기하여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00만원 그리고 관리비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다면 환산보증금은 1억 3천만원이 되어 지방의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다.

**별첨자료. <민법>**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혼인적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비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08.1.1]]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위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제4절 혼인의 효력

제826조 (夫婦간의 의무)

-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0.1.13>

**대한민국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별첨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시행일 2008.1.1]]

제62조 (입양의 신고) ①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871조에 따라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

제7절 혼인

제71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천재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예전에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아웃을 상영한 적이 있었어요, 아담하고 관객들도 많지 않았지만 어느 상영회보다는 특별한 자리였는데요 관객분들이 재미교포셨거든요.

상영을 마치고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에 금발머리의 어떤 여성분이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질문은 아니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조금 생각하시는 듯 뚝을 들이시다가 말씀을 이어가셨는데요, 가족에게 말 할 수가 없어 답답할 때나 아웃팅을 당했을 때 힘들어하지 말라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아빠라고 생각하고 언니, 또는 동생이라고 생각하며 제 2의 가족을 만들어서 행복해지면 되는 거라고..

레즈비언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엄마가 애인이 준 편지를 봤다고 레즈비언인거 눈치 채면 어떡하냐고 걱정하고 컴퓨터 하는거 동생이 보고 눈치 챈 것 같다고 걱정하고..

그럴 때마다 그 얘기를 항상 해줬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니가 내 동생해라”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넘어가지만 많이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참 다행스러운게, 10대 이반들 문화 중에 개인 가족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아빠 삼고 싶은 사람한테 아빠라고 부르면서 정말 아빠와 자식처럼 지내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주위사람이 들으면 진짜 아빠와 개인아빠를 구별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도 아빠에게 애인이 생기면 저절로 엄마가 생기고 아빠에게 아빠가 있으면 동갑이더라도 할아버지가 되고, 심지어는 증조할아버지까지 가더라고요??

그 밖에도 아주 아주 친한 친구가 있으면 서로 쌍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 이야기의 핀트가 약간 엇나갔네요..

몇 일 전에 제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재운 적이 있어요.

원래 저희 집이 외박도 안되고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는 것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아빠한테 커밍아웃을 했다가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니가 그렇게 비정상적인 인생을 원하면 이 집에 붙어있지 말고 그런 비정상적인 곳으로 가서 살으라고 하시면서..

제가 복 받은 집안에서 자란 환경 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자식을 쫓아 내다니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하고 어떻게 키울 자신이 있어서 애를 낳은 건지..

만약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고 해도 전 결혼을 안 할 것 같아요

음 전 결혼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그리고 가족들도 모두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주위 친척들이나 상대의 가족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않거나 축하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시선을 보내면 둘 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고 해도 사람들의 호모포비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중학교 때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같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어있는 나라로 날아가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행복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받지도 못하고 도망가다 싶이 결혼을 하면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가만보면 무작정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고 해도 결혼을 하는 동성 커플을 얼마 없을꺼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호모포бия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이성커플처럼 축하와 환호를 받으며 결혼하기 힘들거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다면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하거나 교육과정에서 이성애 중심적인 것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동성애에 대해 받아드리게 한다거나..

그리고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를 이슈화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쪽으로 이슈가 된다고 해도 동성애자들을 대상화시키기 쉽고 더욱 멀다고 느껴져서 받아드리기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어서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입양한다거나 인공수정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해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나는 왜 엄마만 두명일까 혹은 아빠만 두명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생이라서 그런지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과서나 선생님들이 수업도중 꺼내는 말이라거나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둥 역겹다는 둥 대부분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선생님이 오히려 동성애자들은 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라며 잘못된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교과서에 실린 동성동본 결혼 금지법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호모포비아로 똥똥 뭉쳐있고

교실에서 동성애가 왜 이상해? 왜 역겹고 왜 더러워? 이런 발언을 한번 했다간 정말 토론회장이 됩니다 전혀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다보면 너 왜 이렇게 흥분해? 너 레즈야? 이런 질문이 꼭 나오죠 그럼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호모포비아로 똥똥 뭉쳐있어서 커밍아웃도 하지 못했는데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겠죠..

아 뭐 결론은..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저야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을 때 당당하게 결혼을 하고 축복과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가족이 탄생한다는 거죠 하하 이상입니다

## 당신과 함께 나로서 사는 법

박은우(테조로)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저는 어릴 적부터 나의 미래를 상상할 때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것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지요.

10대 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레즈비언이니까 어떻게 다른 여자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어디서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겠어?’라는 생각에 곳곳이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10대의 끝 무렵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한 때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살고 싶어서,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여자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때는 결혼을 한다 해도 결코 헤어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관계라는 것은 끝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인과의 몇 번의 헤어짐과 만남 속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약간의 비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결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은 ‘세금혜택’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연막 밖에는 없는 것 같았거든요.

- 어떤 형태의 가족을 꾸리고 살고 싶은가? (예: 공동체가족, 파트너와, 친구와 파트너와, 친구와, 레즈비언 마을을 꾸려서 등)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가족이 될 수도, 될 수 없을 수도 있겠지요. 만일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했을 때 10년, 20년 한 사람과 같이 살면서 ‘여성, 남성 부부’보다 2배의 세금을 내고, 몇 배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된다면 화가 날 것 같기는 합니다. 꼭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친구가 없다면 정말 쓸쓸할 겁니다. 아무리 곁에 연인이 있다고 해도 둘만의 고립된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겠지요. 항상 지금까지를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곁에 있어준다면 좋겠습니다. ‘레즈비언 마을’이 있으면 좋은 점도 많고, 재미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호모포비아들의 표적이 되어 혐오범죄의 위험도 높아질 테고요.

-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가? 있다면 이유는? 없다면 그 이유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고 해도 지금으로선 결혼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단단히 묶어놓는 족쇄처럼 느껴지거든요. 주변을 봐도 결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특히 결혼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시선의 그물들이 갑갑하게 보입니다. 낭만적인 사랑으로 아름답게 시작한 결혼이라고 해도 결국엔 그 언약이 굴레가 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몇 십 년씩 오래 같이 산 노부부들을 사람들은 존경하고, 부러워하지만 저는 참 삭막하게도 '저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사랑한 것인가, 그저 같이 산 것인가'라는 물음이 떠오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테니까 결혼이라는 것으로 내 곁을 지켜줬으면 좋겠는 사람을 서로 묶어놓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물론 저와는 달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법 역시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그 이름은 '결혼'이 아닌 거지요. 단지 저는 적어도 지금 만들어져있는 결혼제도에 '동성 결혼'이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몇몇 나라에서는 동성결혼 또는 파트너십이 합법화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예: 그러한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생각 해 본적이 있는가?)

언젠가 이민을 가고 싶다 생각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고, 현재로서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혼, 파트너십이 합법화 되어 있는 나라 = 레즈비언이 살기 좋은 나라'의 공식이 언제나 성립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나라 /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나라들을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십으로 인해 지금 여러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날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위 제도에 준하는 법이 제정된다면 처음엔 많은 문제가 생겨도 언젠가 고쳐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지요.

-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십이 합법화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동성애자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의 법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사실 동성애자들이 어떤 가족을 구성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고, 단체나 개인마다 다 의견이 달라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차별과 억압을 당해야 합니다. 만일 동성혼이나 파트너십이 합법화된다고 해도 공문서 상에 '동성애자'임이 명시되어있다면 공문서를 통해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제화 이전에 사람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이런 부분 역시 신경 써야 하겠지요. 무엇보다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 -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가? 입양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가?

아직까지는 아이를 갖고 싶거나 입양하고픈 생각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까봐 무섭기도 하고, 레즈비언 엄마를 둔 그 아이가 커가면서 겪어야 될 시련들이 분명 존재할 테니까요. 그래도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 상담소에서 활동을 하면서 입양이나 인공수정을 원하는 레즈비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2006년에 독신자 입양이 허용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입양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독신 여성이 정자를 구해서 인공수정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즈비언들이 자신이 원할 때 아이를 입양할 수 있고,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 독신자 입양이 합법화가 되고 나서, 입양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이 변화가 있었는가?

처음에 그 소식을 접하고선 '아,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입양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입양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니 기뻐지요. 하지만 '독신자 입양'인 것이니 제 파트너와 둘이 같이 엄마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저 혼자 또는 제 파트너만이 그 아이의 가족이 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를 수는 있어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힘들고 아쉬운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 - 만약 자신이 파트너와 동거를 하겠다면, 다른 레즈비언친구들 특히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형태 또는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파트너와 동거를 하며 지내는 친구도 있고, 파트너와 같이 살진 않지만 연애를 하면서 지내는 친구도 없고, 파트너가 없는 친구도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각기 나름대로의 관계를 맺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친구가 파트너와 동거하는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저 역시 그 친구를 존중할 것 같은데... 사실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 레즈비언이 사회 제도적으로 혹은 주변 지인들의 도움 없이 아이를 기를 때, 혹은 파트너와 살다가 파트너를 잃게 되는 등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비단 제도적이지 뿐 아니라 정서적, 주변적이지 커뮤니티 이야기 등)**

레즈비언 커플은 고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외딴 섬처럼 누구에게도 자신이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서로만 바라보고 지내는 것이지요. 일대일의 관계는 서로에게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데에는 레즈비언 커플이 자신들의 교제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또 커플 스스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커플일수록 주변에 자신들의 교제를 축하해주고, 인정해주는 지지집단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상담소와 같은 인권단체나 레즈비언 친목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꿈의 ‘밸리 하우스(Valley House)’ \*^ ^\*\_1)

박김수진(박통)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시민결합 등 가족구성권을 둘러싼 논의가 국내 운동 단체들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도 가족구성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논의는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동성애자들이 지향하는 ‘가족’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이고, 어떤 ‘가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조정해 나가는 논의를 깊고 넓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와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가족의 상이 무엇인지 철저한 실태 파악을 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제도로서의 가족’이 가지는 폐해를 밝힐 수 있어야 하며, 동성애자 외의 소수집단을 배제하지 않는 가족에 관한 그림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집단을 소외시키지 않는 그리고 다양한 가족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면, 가족구성권에 관한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라면 저 역시 그러한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동성애자 2인의 1대 1 결합만이 가능하고,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등과 같이 다른 소수집단을 소외시키는 형태의 제도라면 그 제도 안으로 편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 입양?

- 1) <한국레즈비언상담소> 교육사업팀에서 보내주신 청탁서에 적힌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작성하다보니 딱딱한 느낌이 주는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만요. ^^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토론 과정에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입양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양을 원하는 이들이 입양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입양되는 아이 입장에서든 충분히 생각해 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남지만요). 그 형태가 ‘독신자 입양’이어서 동성애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형태로라도 입양을 원하는 이들이 입양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독신자 입양’과 같은 형태가 아닌, 동성애자들의 권리 혹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서의 입양권에 관한 새로운 제도의 마련을 시도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가족구성권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입양권에서 역시 소외되는 집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양의 문제를 생각할 때, 입양권을 획득하느냐, 언제,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입양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가 되더라도 제도화 된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족구성권의 문제나 입양권에 관한 문제에 앞서 우리가 먼저 제기해야 하는 문제는 결혼하지 않을 권리와 자녀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문제 즉, ‘나는 누구(들)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과 결과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를 이루고, 입양권을 ‘획득’하여 이성애자 제도 결혼이 그러했듯이 우리 사회의 정형화 된 가족의 모양 하나를 더하고 마는 식의 결론은 매우 무섭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의 문제이냐?’에 관해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무엇이 무엇에 앞서야 한다’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끊임없는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합의가 도출된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 지인들과의 관계

어떤 형태의 가족을 구성해서 살아가든지 지인들과의 관계를 결코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절대로 ‘나와 너만 영원히 사랑하고, 살아가는 관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불가능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는 큰 문제이지요. 이런 관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가족구성권 문제를 논의에서 별도로 '지인들과의 관계'를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즉, 가족구성권의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지인들과의 관계'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문제로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희와 함께 둘이 살 수도 있고, 정희와 미영이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살 수도 있고, 정희, 미영이와 절교 후에 수정이, 영미, 성희, 민자, 말자와 함께 살 수도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내가 누구(들)와 함께 살 것인지를 한 번 결정하면 죽는 그 날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형태의 가족을 꿈꾸든 그것은 나의 자유이며, 내 지인들의 자유입니다. 내가 어떤 형태의 가족을 꿈꾸든 그것은 어떠한 제한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 살 자유고 있고, 백만 명의 친구들과 살 자유도 있습니다. 아참, 백만 명의 친구들과 살기 위해서는 성격이 좋아야겠네요. \_-;

### 꿈의 '벨리하우스'

저는 매우 심각한 계획주의자입니다. 365일 24시간이 모두 계획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물론, 2040년까지의 계획도 세워 두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_-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획은 변경하라고 있는 것이라는 걸 저도 매우 잘 알고 있고, 매우 실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ㅋㅋ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여성전용 여행자 숙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위스에 만들어야지! 했었는데, 점점 생각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해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최종적인 인생 목표와 제가 만들어 나갈 가족의 상은 매우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성전용 여행자 숙소를 만들 것입니다. 작은 여성전용 여행사가 딸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은 허접할 수도 있으나, 지인들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숙소 홍보를 함께 할 것이며, 접수도 함께 받을 것이며, 정원 공사와 관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제일 친절하고 편안한 여행자 숙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입이 생기면 나눌 것이고(수입이 생겨야 합니다. ^^);, 수입이 없으면 함께 손가락을 빨 것입니다. 지인 중 한 명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 따뜻하게 보내줄 것이고, 남은 지인들과 함께 서로의 건강을 보살필 것입니다.

### 나가며

30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30대는 너무나도 다양한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대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심지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 역시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장 과정과 배경, 경제적인 여건, 학력, 지역, 성

격, 마음의 건강 상태, 몸의 건강 상태...모든 것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 절대로, 결코, 저의 생각과 의견이 30대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제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에 불과합니다. 활동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가족구성권과 입양에 관한 의견을 소개 하였는데, 이 역시도 박통이라는 활동가 개인이 제시하는 의견인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세상 일이 제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내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과 법률적 바람

지나 (그루터기 총무) | 그루터기

파트너와 가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사회제도는 혼인신고 일 것이다. 그 이유는 혼인신고가 우리나라의 합법적 권리 행사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가족으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법적 상속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법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 ■ 가족이 되기 위한 사회법의 바람

#### 1. 혼인신고하기(두 사람이 부부 관계로 인정하는 법)

무엇보다 안정된 가족구성원으로 행복할 권리를 누리며 각종 사회보험이나 특히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2. 혼인신고 후 등본상 표기 삭제

몇 칠 전 한 포럼에 참석했는데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난 후 등본상에(성전환자로 성별검증이 되었습니다)로 표기되어 회사 면접 과정에서 난감한 일들을 겪었다고 들었다. 능력을 인정받아 입사는 했지만 원치 않게 성전환 수술이 알려지고 나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 등본에 이런 기록들이 남지 않아야 그 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 사업은 상관없지만 취업을 생각하는 레즈비언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레즈비언들이 혼인신고를 한 후 등본상 '동성혼인' 으로 기록이 되어 면접부터 아웃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기록이 꼭 필요하다면 호적에 한번 기록하고 등본에서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바람을 생각해보았다.

#### 3. 혼인신고 과정

국내 어느 동사무소에서든지 자유롭게 혼인신고가 되어야 한다.

나는 한 지역에서 8년을 살았고 동사무소 근무도 3년을 했다. 이미 동사무소 직원들을 반 이상 알고 있다. 만약 혼인신고를 지역동사무소에서만 하게 한다면 뻔 한 아웃팅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 거주지가 아닌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신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래 살지 않았더라도 거주지에서는 혼인신고 과정에서 직원들과 안면이 있을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고 해서 자유롭게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 ■ 공정증서 및 상속건을 하게 된 경위

2004년도에 지인들과 영화 “더월2”를 봤다. 사랑하는 사람과 30년 이상을 살다가 갑자기 닥친 파트너의 사망으로 인해 결국 30년 동안 둘만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보금자리는 사망한 파트너로 명의가 되어있어 친조카에게 넘어갔고 남은 파트너는 법적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가까운 노인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지인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고 너도 나도 아픔을 이야기 하면서도 아쉬웠던 것은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로서 법을 대안 할 공증과 상속지정하자 라고 했을 때 지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이 아닌 그냥 한편의 영화였고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몇몇 나라에선 동성결혼 또는 파트너 쉽이 합법화 되어있다는데 일단 성적소수자들이 그 사회에서 행복해야 할 권리로 입법화 되었다는게 너무나도 부러울 뿐이다.

내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나의 파트너도 저렇게 되는게 아닌가 ..... 밤새 한잠도 못자고 뒤척였다. 그리고 하루빨리 공증과 커밍아웃을 가족에게 하리라 하고...

그동안 파트너와 함께 살아오면서 법적으로 권리행사 할 수 있도록 해둔 몇 가지 예이다.

## ■ 공정증서 및 상속건

### 1. 집(공증건)

더월2 영화를 보고나서 이틀 후인 2004년 6월7일 우리는 공정증서의 필요성을 깨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공정증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보증인 2명과 함께 변호사와 함께 앉았다. 평소 잘 알고 지냈던 변호사님이라 많은 질문은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난감했던 질문은 둘의 관계와 공증하는 이유를 물었다. 보증인을 데리고 가면서 우리 관계가 이종사촌이라 알고 있는 두 사람 앞에서 거짓말이 들통 나는 순간이었다. 난 순간

머뭇거리다가 내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준 친구”라 공증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말을 했다. 내 말이 끝나자 이런 질문은 하나의 절차 일 뿐이라며 변호사님은 서둘러 서류 작성을 끝냈다. 공증하는데 돈도 들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적은 돈도 아니다. 보증인 두 사람은 내가 아는 지인으로 그날 이후 우리 관계에 대해 단 한번도 되물어 본 적이 없다. 공증이후 이반 친구들 중에서 보증인을 세워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 2. 사회보험, 연금, 보험등 (상속인 지정건)

우리는 각자 보험 가입한 게 많다.

그 중에 제일 맘에 안 드는 국민연금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상속인 지정을 했다. 먼저 개인 연금보험을 외국계 회사에 가입하면서 상속인 지정을 하기 시작했다. 간단한 절차와 함께 역시 상속인 지정 사유를 쓰는 란 이 있었는데 집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준 친구”라고 썼다. 이 회사에선 사유에 대해 한번도 되물어 본적이 없다. 그 외 국내 보험으로 질병, 암, 생명보험 등도 마찬가지로 모두 서로에게 상속인 지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국내 회사에서는 “가족도 있는데 왜 친구에게 상속을 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하며 여러 번 질문을 해왔다. 물론 난 똑같은 얘기로 일침 가 했고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에 똑같은 내용으로 사유를 쓰고 상속인 지정을 끝냈다.

## 3. 의료보험료 절감

어느 날 의료보험료가 둘이 합해서 20만원 돈이 나왔다. 너무 비싸게 나와서 알아본 결과 주소가 같아서 비슷하게 합산이 되어있었다. 그땐 이미 집도 하나 차량도 한 대로 줄인 상태여서 전화를 했다. 의료보험공단 직원은 상담하는 과정에서 절감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집은 파트너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쪽에서 무상거주신청을 하라고 했다. 절차는 간단했다.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무상거주신청서에 작성만 하면 된다.

회사를 다니면 어쩔 수 없지만 파트너와 함께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엔 무상거주신청 방법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사실 의료보험료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 ■ 어떤 형태의 가족을 꾸리고 살고 싶은가?

어느 날 한 친구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섬에다가 레즈비언 사회를 만들어 살면 어떻나

고 내 대답은 이거였다. 똑 떨어진 섬에서 레즈비언들 끼리 만 모여 사는 건 사회 편식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내 주변 곳곳에 레즈비언 친구, 선배, 후배 등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 즉 된장과 고추장을 맛있게 담그는 할머니도 이웃이었으면 좋겠고 어린 아이들도 열심당 부녀회장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직장인들이 모여 이웃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레즈비언 문화도 알리고 확대시키면서 통합 사회를 만들어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 ■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다

이유는 내가 선택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표이고 또한 가족, 친지, 지인들 앞에서 법적으로 가족이란 걸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

#### ■ 동성결혼 또는 파트너 쉽 이 합법화 된 나라로 이민 갈 생각은 없다.

이유는 또 하나의 문화의 벽과 인종차별 등을 극복하는 어려움을 차라리 국내에서 내 주변인들에게 나를 이해시키는데 노력하고 조금은 복잡하지만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 외국은 이반 친구들과 여행만 하고 싶다.

#### 끝으로

우리는 레즈비언 가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고민에서 그치기 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씩 구체화하고 실현함으로써 주변에 알리게 되고 이반들의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를 법제화시켜서 안정된 가족으로서의 삶을 구축하게 되길 희망한다.

\* 발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상담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레즈비언의 독립

저녁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 첫 번째 물음

먼저 '나는 독립적인 사람인가'라는 물음에 답해보자.  
독립적인 사람이라면 타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얼마큼?  
독립적이지 않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 ◎ 두 번째 물음

나의 독립 의지 또는 욕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독립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때의 독립이란 어떤 상황, 혹은 상태를 말하나.  
왜 그러한 독립을 원하게 되었을까?

### ◎ 세 번째 물음

내가 레즈비언인 것과 나의 독립 욕구는 관련이 있을까?  
레즈비언은 이성애자 여성들보다 독립적인가?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 ◎ 네 번째 물음

과연 독립의 요건은 무엇일까?  
도저히 독립적일 수 없는 요건은 존재하는가.  
나에게 있어서 독립은 어떤 이미지, 무슨 색깔인가.

### ◎ 더 생각해볼 것들

- 나의 방 한 칸
- 독립의 도우미들
- 사랑은 독립의 방해물일까?

## 만남, 사랑.. 그리고 이별 - 그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장민아

가부장적인 일반사회에서의 레즈비언 교제는 정치적인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레즈비언 개인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레즈비언 여성들이 자신들의 인권적인 측면을 생각하기보다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바라봄으로서 연애나 사랑, 그리고 이별을 삶의 의미로 간주하길 선호한다. 자신이 어떤 여성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지만 정작 어떤 방식이나 방법으로 연애나 연인관계를 꾸려나가는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한 방식은 교과서나 정답이 없으므로 각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생성된다. 우리 자신들이 일반사회에서 다양한 정체성에 속하는 만큼 우리 속에서의 교제도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이 강좌가 모든 연애나 관계를 대변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스타일을 벤치마킹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작업의 정석?! 연애의 기초?! 교수와 하수의 차이?!

#### 1. 두려워 말자. 사업에도 밀천이 필요하듯 연애에도 밀천이 필요하다

사람과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 과정이나 결과는 때론 잔인하다는 것을 일단 인정 하자. 잔인한 결과 때문에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거나 사람을 만나 교제를 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연애의 잔인함을 극복하는 길은 영영 사라져 버릴 것이다.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연애의 밀천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이다. (비단 연애뿐만이 아님을 우린 알고 있을 것이다.)

#### 2. 게으른 자여! 연애하지 말지어다.

대부분의 일이든 연애든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성실한 자세를 가진 이가 성공하는 법이다. 사람을 만나려면 우선은 연애에 관해 관심을 쏟고 있어야함은 물론이고 부지런하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나 여기 있어요!'라며 자신의 이상형이 나타날 리 만무하므로 이반 바를 간다든지, 모임에 참석한다든지 하는 연애를 위한

시간할애가 반드시 필요하다. 설령 연애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다. 그것조차도 하기 싫다면 연애를 포기하는 쪽이 훨씬 현명할 것이다. 그리고 ‘연애 할 맘의 준비가 되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듣기 좋은 합리화일 뿐, 연애를 할 기회는 점점 멀어지기만 할 것이다.

### 3. 들이댈 것인가... 짝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형이란 그야말로 이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일 뿐, 현실에서 존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일단 연애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이상형에 대한 집착 따위는 일찌감치 접어두는 것이 나올 것이다. 짝여주기만을 기다린다는 느낌은 확~꽃혀야만 된다는 관념은 연애를 하기엔 위험한 발상이다. 단순하게 생각하자. 들이대서 성공할 확률 어차피 50%다. 실패하더라도 ‘그럼 우리 친구하자!’라고 할 수 있는 뽀뽀함과 용기를 가져보자. 친구로 만나면서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연애의 기초에 해당됨을 잊지 말자.

### 4. 글로벌 시대! 연애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자.

한때 이반들의 말을 빌자면 수도권에는 소위 말하는 부치(Butch)가 기근 현상이고 지방에는 펴(Femme)이 기근 현상이라 한다. 그렇다고 장거리 연애를 하기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정서적인 정체성이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치나 펴로 승부하기 보다는 두 가지 성향을 적절히 조화 시켜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점점 넓어 질 것이다.(사실 부치나 펴의 기준도 아주 모호함이 많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잠자리에서 늘 수동적이기만 한다면 언젠가 상대가 지치기 마련이고 반대로 ‘내가 부치 체면에 어찌 수동적이리오.’라는 20세기 사고방식은 연애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 4. 건강 하라!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일 것이다

설령 좋은 사람을 만났다하더라도 하루가 멀다하고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네 하면서 앓는다면 서로가 지쳐만 갈 것이다. 연애를 하기에 앞서 늘 건강을 잘 챙기고 관리해주는 것이 연애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일 것이다. 술, 담배를 끊기 힘들다면 매일 웰빙 음식이나 보양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복용하자.

### 5. 연애에도 돈이 필요하다!

일반이든 이반이든 알다시피 연애를 하려면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다. 돈 없으면 연애도 못하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주변을 둘러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연애가 단계를 거듭할수록 두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이다. 특히 매일 밤 집에 가기 싫고 같이 있고 싶을 때는 더없이 간절하게 될 것이다.

혼자여서 행복하다!!

◆ 솔로를 긍정하는 몇 가지 방법 ◆

1. 솔로는 죄가 아니다!!!

솔로를 바라보는 일부의 시선은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라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연애를 못하는 것이라고 근거 없는 추측을 일삼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위기고 툭하면 감정싸움을 일삼는 커플보다는 솔로가 오히려 즐겁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은 무시하자. 대신 진지한 자기 성찰을 곁들인다면 진정으로 화려한 솔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 커플의 답사는 솔로에겐 원동력이다.

솔로와 커플이 만나면 솔로들이 괴로워하거나 열 받는 시점은 커플들이 솔로 앞에서 사랑 행각을 거리낌 없이 할 때 일 것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법! 기죽지 말고 뻔뻔한 얼굴로 더 하도록 부추겨라. 그리고 한 수 배워라. 이 다음에 자신이 커플이 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로 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3. 자위냐? 원나잇(One night stand)이나?

솔로로 지내는 것에 몇 가지 어려움(?)중에 성생활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참고 지내는 방법은 자신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훌륭한 방법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도저히 원나잇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없는 솔로라면 자위도 권할만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레즈비언들이 자위에 대해 아직은 긍정적이지 못한게 현실이다.

그러나 자위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알아가고 성감대를 파악하고 개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솔로의 성생활에 활기를 줄 것이다. 자신이 섹스와 사랑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솔로라면 자위가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를 통해서 원나잇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4. 자신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을 만들자.

자신의 일상을 얘기할 수 있는 믿음직한 친구나 가족을 만들어 놓는 것도 솔로생활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지인을 만드는 것은 일방적이거나 나 자신의 이기적인 방법으로는 옳바르지 않다. 자신이 외로울 때 수다 떨 수 있고,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는 상대적으로 그 친구의 어려움이나 수다를 받아줄 마음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이 외로울 때만 불러내고 옆에 둔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 것이다.

## 5. 솔로여...독립할 준비를 하자! 그리고 파티를 하자!

솔로여서 집에서 해주는 모든 것을 받기보다 독립할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것도 긍정적인 솔로로 거듭나는 방법이다. 혼자서 일을 해결하다 보면 경제적인 지식이든 살림의 지식이든 자신이 몰랐던 멋진 상식이나 지식들을 발견하고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미도 솔솔 할 것이다. 그래도 때로 외롭다면 독립한 이반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파티를 열거나 생활의 지식을 나누는 것도 즐거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집을 계약하는 방법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독립을 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솔로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이런 연인이 되어 줄께.

사랑의 유효기간은 상대의 단점이 더 이상 장점으로 보이지 않을 시점부터다. 어쩌면 상대는 그대로인데 자신의 시각이 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처음엔 과묵한 상대가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과묵한 면이 무뚝뚝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사랑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의 좋은 점들은 그대로이길 바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는 반드시 바꾸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한다. 그럴 땐 자신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되뇌어 보자.

## ♥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열 가지 조언 ♥

### 1. 서로 존댓말을 쓰세요.

처음 만남을 가질 때는 서로 존댓말을 하다가 연인이 되고 나면 거의 반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익숙해지다 보면 다툼이 있을 때 막말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상대방에게 말꼬리를 물고 짜증내기 일쑤죠. 관계가 진행되더라도 존댓말을 한다면 막말을 하게 되는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 2.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해주고 억울해 하지도 마세요.

연인관계에서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게 되면 상대가 배려하는것에 대해서 당연시하게 된다든가 웬지 상대가 내 배려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으면 억울해한다든지 보상받고 싶다든지 하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진정 자신이 상대를 위해 혹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였다면 조금 섭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여 봅시다.

### 3. 신뢰와 사랑이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흔히 커플들이 '사랑하니까 믿는다' '못믿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추측하거나 의심하기도 하지요. 대개 신뢰가 부족한 사람들의 변명

이 ‘사랑은 하는데...’라 말하기 일쑤입니다. 웬만하면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신뢰라는 엔진이 점점 녹슬게 된다면 그 차는 결국 엔진은 통째로 교체해야 하겠지요?!

#### **4. 진실을 얘기하되 진심으로 얘기하세요.**

때론 진실이 잔인하지만 진심으로 얘기한다면 차라리 따듯할 수도 있습니다. 잔인한 진실 앞에서마저도 예의가 필요한 법입니다. 솔직하게 상대를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령 사랑의 감정이 끝났더라도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동은 삼갑시다.

#### **5. 상대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을 존중해 주세요.**

정작 당사자들은 문제가 없는데도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관계에 관해서 자신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맡겨두고 조언을 원할 때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질타는 접어두시고 되도록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신이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구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가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오히려 연인관계에서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상대의 주변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 **6. 성생활에 관해서 터놓고 얘기 하세요.**

커플의 성생활은 부끄러움이나 쑥스러움은 있겠지만 거짓이 동반된다면 불만이 쌓이기 십상입니다. 원치 않거나 혹은 요구하고 싶거나 하는 것은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보는 것이 미래의 성생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7. 각자의 영역을 가지세요.**

쉬운 예로 취미가 서로 같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틀리더라도 영역을 인정해줄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강제로 같기를 요구하기보다 좀 더 시간은 두고 천천히 합의를 보십시오.

#### **8. 폭력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금물!**

언어폭력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물리적인 폭력은 시간이 지나가서도 육체와 정신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된 폭력적인 성향은 더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9. 서로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세요.**

시간이 거듭될수록 관계가 긴장감을 잃고 무미건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함께 실천해 보도록 해 보십시오.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본다던가 저축에 관해서 혹은 여행에 관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서로의 비전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 10. 합의적인 경제관념을 가지도록 하세요.

커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선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선 낭비가 강하고 한쪽에서만 아끼려고 한다면 점점 서로에게 지쳐갈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실패한 사랑이 아름답지 않으란 법은 없다!

#### 1. 사랑은 영원하다. 다만 상대만 바뀔 뿐이다.(사랑의 열정을 잃지 말자.)

사람은 누구나 사랑 없이 평생을 살기란 힘들지만 사랑이 당신에게 전부는 아니다. 한번 사랑하고 마치 자신의 평생의 사랑이 끝난 것처럼 굴지 말자. 죽는 그날까지 한사람과 오붓하게 살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당신 삶에 사랑은 계속 될 것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 2. 아무도 버림받지 않는다.(변명만 있을 뿐이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은 아름답게 포장한 변명에 불과하다. 사랑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당신은 그 전략이 부족했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대방도 얼마나 힘들었을 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3. 헤어짐의 슬픔은 성급한 만남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끊임없는 번개는 실패의 연속)

헤어진 후 적어도 3개월은 자신의 성찰이 필요하다. 성급하게 상대가 없는 여백을 채우려 하지 말자. 결국 그로인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확인 할 뿐이다.

#### 4. 마음은 원래대로 A/S가 되지 않는다. (성숙이라는 A/S가 있을 뿐이다.)

‘너와 지낸 시간을 내 삶에서 삭제할 수 있다면...’이라고 해봐야 때는 늦었다. 서로 열심히 사랑했다면 후회는 적게 남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랑을 위해서 이전의 실수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성숙해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 5. 경제적으로 슬픔을 이겨낼 것.(카드 청구서만 날아올 뿐이다.)

헤어진 슬픔에 매일 술을 마시고, 쇼핑을 계속하고... 이런 방법은 그때의 순간만을 충족할 뿐이다. 차라리 오락실 노래방을 가자. 500원짜리 동전 몇 개면 충분하다. 그리고 온갖 자기와 비슷한 이별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청승스러운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맘은 한결 가벼워 질 것이다.

**6. 자아칭찬으로 이별을 합리화 할 것.(못난 내가 내 사랑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뿐!)**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도 각자의 그릇이 있다.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기엔 그 그릇이 아주 작았다고 생각하라. '네 평생 나 같이 멋진 사람을 만나긴 힘들거다.' 라고 주문을 걸자. 그리고 잘 먹고 잘살 것을 다짐하라.

**7. 친구로 남을 수 있다면 사양하지 말 것.(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다.)**

서로 사랑했던 관계였다면 그보다 좋은 친구는 찾기 힘들다. 자신을 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드물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시간이 흘러 맘의 정리가 되면 친구로 받아들일 여유가 생길 것이다. 사랑했던 사람과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8. 스캔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당당함만이 살 길이다.)**

사랑했던 사람과 다니던 이반 바나 장소를 피하지 말자. 혹시 그 전 상대를 만나더라도 가볍게 안부라도 주고받자. 언제 너를 알았냐는 식은 곤란하다. 그 행위가 더욱 '나는 너를 잊지 못했다'라는 인상만 줄뿐이다. 친했던 주변 사람들과도 인연을 계속하자.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그 전 연인을 잊기 더 어려울 수 있다. 혼자 있다보면 왜 우리가 헤어졌는지 만을 계속 생각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랑이 떳떳했다면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9. 헤어진 후 타인들에게 전 연인 험담하지 말기(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헤어짐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다. 다른 지인들에게 전 연인의 험담은 하지 말자. 그러면 결국 고스란히 자신에게 대가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사람을 좋아한 자신은 타인에게 더없이 한심해 보일 것이다. 진실은 때가 되면 타인들도 알게 되기 마련이고 타인들이 당신의 연애사에만 매달리고 관심 있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차라리 그 사람의 좋았던 면을 얘기하자. 그러다 보면 자신이 어떻게 상대를 대했었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주의 할 점은 헤어진 후 전 연인을 험담하는 사람과 누가 사귀려고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10. 헤어져서 다행인 연인은 되지 말기. (있을때 열심히 사랑하자!)**

누군가에서 잊혀 진다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라는 노래가사처럼 헤어지고 나서 정말 잘 헤어졌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은 되지는 말자. 있을 때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했다면 헤어진 후에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럴수록 헤어진 연인이 되돌아 올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P. S*

연애나 사람과의 관계는 ‘운명의 수레바퀴’와 같아서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그 관계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즉, 숙명은 바꿀 수 없겠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숙명이 나무의 뿌리라면 운명은 나뭇가지와 같다. 썩은 나뭇가지를 쳐내는 일(선택)은 고통을 동반한다. 사랑이 잔인한 행복이라 말하듯이 나는 그것을 아름다운 고통이라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마치 슬프게 혹은 어둡게 짜여진 듯한 운명에 자신의 삶을 내맡기지 않도록 하자. 그러기엔 우리네 삶이 너무 찬란하지 않을까..

#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회원들의 회비와 레즈비언 인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사무실 유지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후원회원>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후원회원은 성 정체성과 무관하게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정기적인 후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소식지 및 발간자료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일회적인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운영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CMS(자동이체) 후원하기>

CMS(자동이체)는 한 번 등록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권재단 <사람>에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후원인의 통장에는 상담소 대신 인권재단 <사람>이라고 찍힙니다. 상담소에 전화나 대표메일을 통해 후원해주실 분의 이름과 주민번호, 은행과 계좌번호, 후원금액과 연락처,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개인정보는 CMS 등록용으로만 사용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498101-01-114263 (예금주: 이진화)  
조흥은행 333-04-833266 (예금주: 이진화)  
우리은행 1002-329-844347 (예금주: 이진화)  
농협 079-12-806362 (예금주: 이진화)  
외환은행 630-004684-742 (예금주: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우체국 010041-01-030671 (예금주: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근시간 |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무전화 | 02) 703-3542  
대표메일 | [lsangdam@lsangdam.org](mailto:lsangdam@lsangdam.org)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7 레즈비언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  
제 3회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판타스틱 레즈비언 생활백서”  
자료집

발행일 | 2007년 9월 29일

펴낸곳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대표전화 02) 703-3542

상담전화 02) 718-3542

팩스번호 02) 703-3543

대표메일 lsangdam@sangdam.org

상담메일 lsangdam@hanmail.net

홈페이지 www.lsangdam.org

서울특별시 중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한국레즈비언상담소